

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

1) 변경사유

- ① 제25조(판매가격) 제3항, 제4항
 - 본건 펀드의 설정(추가설정)시 선취판매수수료 없는 것으로 본 조항 삭제
- ② 제37조(보수) 제2항 1호, 2호
 -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매입보수 금액 변경

2) 변경내용

관련조문	변경 전	변경 후
신탁계약 제25조	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~② <좌동></p> <p>③ 삭제 <개정 2013.11.18></p> <p>④ 삭제 <개정 2013.11.18></p>
신탁계약 제37조	<p>제37조(보수)</p> <p>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...(중략)</p> <p>.... 금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매입보수 : 총 30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</p> <p>2. 지급방법: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금삼억원(₩300,000,000)을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37조(보수)</p> <p>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...(중략)</p> <p>.... 금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매입보수 : 총 50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</p> <p><개정 2013.11.18></p> <p>2. 지급방법: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금오억원(₩500,000,000)을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<개정 2013.11.18></p>

3) 변경안 시행일: 2013년 11월 18일